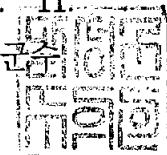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9
------------	-----

제출일자 : 2008. 11.

제출자 : 달성군수



### □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우리 군과 관련된 조문 개정과 감면 대상 명확화 및 용어정비, 근거법명 변경 및 인용호수 변경에 따른 개정, 국가 행정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 및 장애인 가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의 명확화
- 「임대주택법」, 「오지개발촉진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명 및 인용호수 변경
- 「정부조직법」의 국가 행정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와 상충함에 따른 삭제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 10. 21 ~ 11. 10 (특이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3호중** “건설교통부” 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 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 을 “취락지구정비계획”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으로 하며,

동조 제1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로 하며,

동조 제1항제2호중 “재산세” 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로 하며,

동조 제2항제2호중 “재산세” 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로 한다.

제18조중 “주거용 부동산” 을 “주택” 으로 한다.

제20조중 “내지 제6호” 를 “부터 제7호” 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와동조 제2항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를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로 하여 제25조의2로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장애인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 ~ 4. (생 략) ② (생 략)</p>	<p>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생 략)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7 (생 략)</p>	<p>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현행과 같음) 3. 국토해양부 4~7 (현행과 같음)</p>
<p>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생 략) 1. ~2. (생 략)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개발사업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p>	<p>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lt;삭 제&gt;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p>



현 행	개 정 안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3. (생 략)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 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3. (현행과 같음) ②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p>제1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2. (생 략)</p>	<p>제1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      -----      ----- 주택 -----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0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0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p> <p>-----      ----- 부터 제7호      -----      -----      -----      -----.      -----.</p>
<p>제25조의2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	<p>제25조의2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p>